

[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1. 원광보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조직) 제13호에 “BH공유대학사업단”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조직)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성공지원처, 국제교류처, 총무처, 산학협력단,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대외협력실 및 특별사업기구를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당 2.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조정팀, 평가관리팀을 둔다. 3.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둔다. 4. 입학홍보처에는 입학관리팀, 홍보전략팀을 둔다. 5.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 진로취업팀을 둔다. 6. (삭제20200902) 7. 총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을 둔다. 8. 국제교류처에는 국제협력팀을 둔다. 9.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둔다. 10. (삭제20200902) 11.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 학교기업사업단,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 12. (삭제20200902) 13.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0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K-MOVE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u>BH공유대학사업단</u>,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등을 둘 수 있다. <p>② 대학교당에는 교무자격을 가진 자를 교무로 보하고 대학교화를 주관한다.</p> <p>③ 제1항의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보하며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서 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LINC3.0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p> <p>④ 각 부서의 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p>	<p>제7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0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K-MOVE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u>BH혁신융합대학사업단</u>,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등을 둘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별표 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제1호 4)에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사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으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연구 1)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된 국제학술지와 한국학술진흥재단(KCI)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실적을 인정 2) 연구 용역 수행 :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한 정부 및 지자체 연구 용역(정부재정지원사업 포함) 실적만 인정 3) 정책사업연구 : 주무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진행한 연구만 인정 4) 대학중점사업 참여 : TDC 개발 참여, <u>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u> 등 직접 참여 5) 연수 후 연구보고서 : 교무처에서 주관한 해외연수 및 산업체연수 보고서 실적만 인정	[별표 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연구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중점사업 참여 : TDC 개발 참여, <u>첨단분야 혁신융합 대학사업</u> 등 직접 참여 5)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조(기구)에 “LINC+사업단”을 “LINC3.0사업단”으로 변경하고, “BH공유대학사업단”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변경한다.

- “제20조(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을 “제20조(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1항에 “BH공유대학사업단에”를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2항에 “BH공유대학사업단은”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으로 변경하고, “BH공유대학사업단”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구)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대학본부, 학부 및 학과,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학교기업으로 구성하며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대외협력실, 특별사업기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사업단, K-MOVE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등을 둘 수 있다.</p>	<p>제3조(기구)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대학본부, 학부 및 학과,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학교기업으로 구성하며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대외협력실, 특별사업기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0사업단, K-MOVE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등을 둘 수 있다.</p>
<p>제20조(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①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p> <p>②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은 총장 직속의 특별사업기구로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제20조(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 ①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p> <p>②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총장 직속의 특별사업기구로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4.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규정명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을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으로 변경한다.
- 제1조(목적)에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에”로 변경한다.
- 제2조(정의)에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으로 변경하고, “BH공유대학사업단”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변경한다.
- 제3조(임용 및 자격) 제1항에 “BH공유대학사업단장”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으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 (규정명)	원광보건대학교 BH혁신융합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따른 바이오헬스(이하 “BH”라 한다) 분야 운영 및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BH연구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에 따른 바이오헬스(이하 “BH”라 한다) 분야 운영 및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BH연구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BH연구교수라 함은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비 지원을 받는 우리대학 BH공유대학사업단(이하 “BH사업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사업비에서 전임 연구인력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BH연구교수라 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비 지원을 받는 우리대학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하 “BH사업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사업비에서 전임 연구인력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자격) ① BH연구교수의 임용은 BH공유대학사업단장(이하 ‘BH사업단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BH연구교수는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BH연구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준용하여 임용한다. ③ BH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 BH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조(임용 및 자격) ① BH연구교수의 임용은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이하 ‘BH사업단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교무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조(구성) 제2항에 “원광보건대학교 BH(BioHealth)공유대학사업,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을 “BH(Bio Health)혁신융합대학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으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다만, 부총장, 대학교당 교무, 대학본부 부서장, 산학협력단장, 비서실장, 대외협력실장, 학교기업사업 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3인과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으로 한다.</p> <p>② 국가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선도 전문대학(LINC3.0)사업, 원광보건대학교 BH(BioHealth)공유 대학사업,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예우한다. 단, 임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선도 전문대학(LINC3.0)사업, BH(Bio Health)혁신융합대학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예우한다. 단, 임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6. 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규정명 “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공유대학사업단운영규정”을 “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 제1조(목적)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으로 변경하고, “BH공유대학사업단”을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으로 변경한다.
- 제8조(센터 및 팀) 제4항 제2호에 “디지털공유대학사업”을 “혁신융합대학사업”으로 변경한다.
- 제10조(기타위원회) 제2항에 “공유대학의”를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3항에 “공유대학의”를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9항 제1호에 “공유대학”을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공유대학”을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10항 제2호에 “공유대학”을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같은항 제3호에 “공유대학”을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을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같은조 같은항 제5호에 “타공유대학의로의”를 “타 혁신융합대학의”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공유대학사업단운영규정 (규정명)</p>	<p style="text-align: center;">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u>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바이오헬스 분야)</u>」(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원광보건대학교 <u>BH공유대학사업단</u>(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u>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바이오헬스 분야)</u>」(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원광보건대학교 <u>BH혁신융합대학사업단</u>(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센터 및 팀) ① 공동 교과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성과 분석, 산학연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지원 등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BH교육인프라혁신센터, BH교수학습혁신센터, BH성과평가센터, BH산학연계센터, BH사업운영팀, BH사업지원팀을 설립, 운영한다.</p> <p>② BH교육인프라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제도(초유연학사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 2. 교육모델 개발·공유·확산에 관한 업무 3. 교육모델 관련 연구에 관한 업무 4. 공동 교과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5. 학업성취도진단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6. 공동 교과목-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p>③ BH교수학습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플랫폼(LMS, e-코칭, 디지털리빙랩, 비트웨어) 운영에 관한 업무 2. 공동 LMS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p>④ BH성과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성과분석 및 질관리 업무 2. 디지털공유대학사업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 3. 교육성과 평가 결과 환류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 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p>⑤ BH산학연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학연계형 교육모델(리빙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협력기업-멘토POOL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업무 3. 취·창업연계 및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 	<p>제8조(센터 및 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현행과 같음)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④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혁신융합대학사업</u>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 3. ~ 4. (현행과 같음) <p>⑤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4. 취·창업 및 진로 컨설팅에 관한 업무</p> <p>5. 인문사회(비전공) 커리어개발에 관한 업무</p> <p>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p> <p>⑥ BH사업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p>1.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p> <p>2. 사업비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p> <p>3. 사업비 예산집행관리에 관한 업무</p> <p>4. 사업단 협의회에 관한 업무</p> <p>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p> <p>⑦ BH사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p>1. 성과공유 및 확산에 관한 업무</p> <p>2.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p> <p>3. 바이오헬스산업 현황파악 및 연구 활동</p> <p>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p>	<p>4, ~ 6.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타위원회) ①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유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운영, 환류 등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BH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p> <p>③ 공유대학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BH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p> <p>④ BH교육과정위원회 및 BH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교내외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BH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10인 이내의 교내외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BH사업실무위원회, BH교육과정위원회, BH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p> <p>⑦ BH사업실무위원회, BH교육과정위원회, BH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⑧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p>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p> <p>2. 사업목표 및 지표(핵심 및 자율)관리</p> <p>3. 사업추진 및 관리</p> <p>4. 사업비 상시 관리 및 보고(부적정 집행사례 발견시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p> <p>5. 사업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교내외 홍보</p> <p>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p> <p>⑨ BH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p>1. 공유대학 운영과 관련한 학사제도 및 학사지원체제 심의</p> <p>2. 공유대학 교육과정 심의</p> <p>3. 현장 학생, 기업, 교수 만족도 및 여론 수렴, 개선 방향 조사 및 연구</p> <p>4. 교육성과 및 핵심/자율 성과지표 바탕 교육과정/교과목 환류</p>	<p>제10조(기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혁신융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운영, 환류 등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BH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p> <p>③ 혁신융합대학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BH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⑨ (현행과 같음)</p> <p>1. 혁신융합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학사제도 및 학사지원체제 심의</p> <p>2. 혁신융합대학의 교육과정 심의</p> <p>3.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⑩ BH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공동활용 조직, 공간, 물리적 자원 확산에 대한 결정 2. 공유대학 학사/임용시 법률적 사항 검토 3. 공유대학 간 예산분배 4.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5. 공동활용대학 및 타공유대학으로의 공유플랫폼 확장 여부 결정	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혁신융합대학의 학사/임용시 법률적 사항 검토 3. 혁신융합대학의 간 예산분배 4. 혁신융합대학의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5. 공동활용대학 및 타 혁신융합대학의 공유플랫폼 확장 여부 결정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교원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5조(승진의 요건)에 제5항 “⑤ 원격교육 콘텐츠의 실적은 K-MOOC, BH교과목, 권역원격지원센터 협약 개발 및 그에 상응한 콘텐츠에 한하며, 1학점 30%, 2학점(3학점 8주 과정 포함)은 50%, 3학점은 100%로 인정한다.”를 신설한다.
- 같은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항 변경하고, “최대 100%까지”를 “최대 500%, 전임교원의 연구실적물은 최대 100%까지”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기준 승진 임용부터 적용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승진의 요건) ① 교원의 직급별 승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승진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구분	최소 소요년한	최소 연구실적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구분	최소 소요년한	최소 연구실적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교수	7	500%	1. 국제저명학술지(SCI, A&HCI, SSCI, SCIE) 2. 학술진흥재단등재지(후보지 포함) 3. 저서 4. 박사학위논문	교수	7	500%	1. ~ 6. (현행과 같음)
부교수	6	500%	5. 일반학술지(평가결과 “우”(80점)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6. 이러닝콘텐츠(원격 수업교과목, K-MOOC 등)	부교수	6	500%	

현행	개정(안)
<p>②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1인 단독연구 또는 저서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70%, 3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50%,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저서 30%, 박사학위논문 200%로 인정한다.</p> <p>③ 교수업적평가 점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p> <p>④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p> <p>< 신설 ></p> <p>⑤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의 연구실적물은 최대 100%까지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원격교육 콘텐츠의 실적은 K-MOOC, BH교과목, 권역원격지원센터 협약 개발 및 그에 상응한 콘텐츠에 한하며, 1학점 30%, 2학점(3학점 8주 과정 포함)은 50%, 3학점은 100%로 인정한다.</p> <p>⑥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의 연구실적물은 최대 500%, 전임교원의 연구실적물은 최대 100%까지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부칙</p> <p>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기준 승진 임용부터 적용한다.</p>

8.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0조(재심의 청구) 제1항에 “15일”을 “7일”로 변경한다.
- 본 규정에 부속된 [별표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1】 (개정)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연구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연구 (15%) 90점	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저서, 및 연구활동 (90점)	국제학술지 1)	(1인 단독 80점) (2-3인 70점) (4인 이상 60점)	80점	최대 80점	S급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 초판 전문서적(전공)	(1인 단독 70점) (2-3인 60점) (4인 이상 50점)	70점			A급
		전국규모 학술지 1)	(1인 단독 30점) (2-3인 25점) (4인 이상 20점)	30점			
		번역서, 편저서	(4인 이내)	5점		최대 40점	
		연구 용역·위탁과제 수행 2)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미만	1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억원 이상		40점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연구 (15%) 90점	사업보고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3)	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	60점		최대 60점	
	정책연구 및참여 (60점)	정책과제수행연구 (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4)	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	60점		최대 60점	
		대학중점사업 참여 5)	(1건당 30점)				
	연수 후 보고서 6) (30점)	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	(1년 이상 30점)	30점		최대 30점	
			(6개월 이상 25점)				
			(16주 이상 20점)				

- 1)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된 국제학술지와 한국학술진흥재단(KCI)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전국규모학술지, 전공서적 등 실적을 인정
 - 2) 연구 용역·위탁과제 수행 :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한 정부 및 지자체 연구 용역·위탁과제 실적만 인정, 연구 용역·위탁과제별 개별 실적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3)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 대학에서 주관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보고서 참여 실적만 인정
 - 4) 정책과제수행연구 : 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에 따라 대학정책 및 현안 과제를 진행 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5) 대학중점사업 참여 : TDC 개발 참여,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직접 참여, K-MOOC, BH교과목, 권역원격지원센터 협약개발,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및 그에 상응한 사업 (원격교육콘텐츠 1학점(15시간) 10점, 2학점(30시간) 20점, 3학점(45시간) 30점을 부여하며 재학생에 한정된 교육콘텐츠는 인정하지 아니함)
 - 6) 연수 후 연구보고서 : 교무처에서 주관한 해외연수 및 산업체연수 보고서 실적만 인정
-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함

4. 산학협력실적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산 학 협 령 실 적 (30%) 180점	산 학 협 령 교 육 활 동 (60점)	현장실습 방문지도	(회당 2점)	20점			최대 60점
		현장실습 심화 교육 17)	(건당 10점)				
		캡스톤디자인 I 교육	(건당 5점)	20점			
		캡스톤디자인 II 교육	(건당 10점)				
		공유협업 및 융합교육 18)	(건당 15점)	15점			
		학생취업 연계 19)	(1인당 5점)	30점			
		창업동아리	(건당 10점)	10점			
		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 20)	(건당 10점)	10점			
		산업체 재직자 교육	(건당 10점)	10점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산학협력실적 (30%) 180점	산학협력연구활동 (70점)	기술이전	기술료	(10만원당 5점)	20점		최대 70점	
			횟수	(건당 5점)	10점			
		특허출원	국내출원	(건당 5점)	20점			
			국제출원	(건당 10점)	30점			
		특허등록	국내등록	(건당 10점)	30점			
			국제등록	(건당 15점)	45점			
		지식재산권 취득 21)	건수	(건당 3점)	10점			
		연구장비 공동 활용	건수	(건당 5점)	20점			
			수입금	(100만원당 5점)	20점			
		산학공동 R&BD		(건당 10점)	30점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건당 10점)	20점			
교원 창업		(건당 30점)	30점					
신기술·제품 인증		(건당 20점)	20점					
산학협력실적 (30%) 180점	산학협력동시활동 (50점)	기술·경영지도	가족회사 연계 기술지도	(기술지도 7회당)	14점		최대 50점	
			그 외	(기술지도 회당 5점)	10점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유료가족회사	(산업체당 10점)	30점			
			그 외	(산업체당 5점)	10점			
		산업체 직무연수 및 파견 활동 22)			(4주 이상 10점)	20점		
					(2주 미만 5점)			
		학교(기술지주)기업 설립 운영			(건당 30점)	30점		
		산학협동 협약 23)			(회사당 5점)	20점		
		내부	장학금 기탁실적(10점)		(60만원 이상)	10점		
					(30만원 이상)	7점		
					(30만원 미만)	5점		
			발전기금 기탁실적(10점)		(60만원 이상)	10점		
					(30만원 이상)	7점		
			(30만원 미만)	5점				
		외부	장학금 유치실적(10점)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	7점		
					(100만원 미만)	5점		
발전기금 유치실적(10점)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	7점				
	(100만원 미만)	5점						

- 17) 현장실습 심화 교육 : 현장밀착형 워크스터디 지도교수
- 18) 공유협업 및 융합교육 : 공유협업 교육(리빙랩, 타대학 등 공유협업 프로젝트 수행) 및 융합교육(융합형 캡스톤, 융합형 현장실습, 융합형 멘토링) 운영 실적을 인정
- 19) 학생취업연계 : 1인1취업프로젝트의 취업 실적만 인정
- 20) 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 참여 : 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참여 실적 등
- 21)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출원(등록 제외), 실용신안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실적 인정
- 22) 산업체 직무연수 및 파견 활동 : 교무처 주관 16주 미만 산업체연수 및 기타 행정부서 산업체 직무연수 실적을 인정
- 23) 산학협동 협약 : 사회수요맞춤형교육(허리인재, 주문식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협약만 실적으로 인정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1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심의 청구)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결과통보 후 <u>15일</u>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관련서류와 함께 신속히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재심사 결과를 본인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재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시는 교원인사위원회에 2차 재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다. ⑤ 2차 재심청구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신속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한다.</p>	<p>제10조(재심의 청구)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결과통보 후 <u>7일</u>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1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구 분	내 용																																							
현 행	<p>【별표 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연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영역</th> <th style="width: 65%;">평가항목</th> <th style="width: 5%;">기준점수</th> <th style="width: 5%;">평가점수</th> <th style="width: 5%;">총계</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구 (15%) 90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지서, 및 연구활동 (9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제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단독 60점) (2-3인 50점) (4인 이상 40점)</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80점</td> <td rowspan="6"></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A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국규모 학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단독 50점) (2-3인 40점) (4인 이상 30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B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 서적(전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단독 25점) (2-3인 15점) (4인 이상 10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용역 수행 2) 번역서, 편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5백만원 이상) (4인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5점 5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사업연구 (6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과제수행연구(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3) 대학중점사업 참여 4)</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당 30점) (1건당 3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60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수 후 연구보고서 5) (3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30점) (6개월 이상 25점) (16주 이상 2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30점</td> </tr> </tbody> </table>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연구 (15%) 90점	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지서, 및 연구활동 (90점)	국제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	(1인 단독 60점) (2-3인 50점) (4인 이상 40점)	80점		A급	전국규모 학술지	(1인 단독 50점) (2-3인 40점) (4인 이상 30점)	B급	전문 서적(전공)	(1인 단독 25점) (2-3인 15점) (4인 이상 10점)	연구 용역 수행 2) 번역서, 편저서	(1인 5백만원 이상) (4인 이내)	5점 5점	<신 설>						정책사업연구 (60점)	정책과제수행연구(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3) 대학중점사업 참여 4)	(1건당 30점) (1건당 30점)	60점		최대 60점	연수 후 연구보고서 5) (30점)	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	(1년 이상 30점) (6개월 이상 25점) (16주 이상 20점)	30점		최대 30점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연구 (15%) 90점	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지서, 및 연구활동 (90점)	국제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	(1인 단독 60점) (2-3인 50점) (4인 이상 40점)	80점		A급																																	
			전국규모 학술지	(1인 단독 50점) (2-3인 40점) (4인 이상 30점)					B급																															
			전문 서적(전공)	(1인 단독 25점) (2-3인 15점) (4인 이상 10점)																																				
		연구 용역 수행 2) 번역서, 편저서	(1인 5백만원 이상) (4인 이내)	5점 5점																																				
		<신 설>																																						
		정책사업연구 (60점)	정책과제수행연구(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3) 대학중점사업 참여 4)	(1건당 30점) (1건당 30점)			60점			최대 60점																														
		연수 후 연구보고서 5) (30점)	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	(1년 이상 30점) (6개월 이상 25점) (16주 이상 20점)	30점		최대 30점																																	
			<p>1)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된 국제학술지와 한국학술진흥재단(KCI) 등재 및 등재 후보지 실적을 인정</p> <p>2) 연구 용역 수행 :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한 정부 및 자치체 연구 용역(정부재정지원사업 포함) 실적만 인정</p> <p>3) 정책사업연구 : 주무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진행한 연구만 인정</p> <p><신 설></p> <p>4) 대학중점사업 참여 : TDC 개발 참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직접 참여</p> <p>5) 연수 후 연구보고서 : 교무처에서 주관한 해외연수 및 산업체연수 보고서 실적만 인정</p> <p><신 설></p>																																					

구분	내용																																																																						
개정(안)	【별표 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76 342 363 398">영역</th> <th colspan="2" data-bbox="363 342 1134 398">평가항목</th> <th data-bbox="1134 342 1198 398">기준점수</th> <th data-bbox="1198 342 1262 398">평가점수</th> <th data-bbox="1262 342 1326 398">총계</th> <th data-bbox="1326 342 1390 398">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6 398 363 1344" rowspan="12">연구 (15%) 90점</td> <td data-bbox="363 398 483 1344" rowspan="6">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저서, 및 연구활동 (90점)</td> <td data-bbox="483 398 842 521" rowspan="3">국제학술지 1)</td> <td data-bbox="842 398 1134 454">(1인 단독 80점)</td> <td data-bbox="1134 398 1198 454" rowspan="6">80점</td> <td data-bbox="1198 398 1262 454" rowspan="6"></td> <td data-bbox="1326 398 1390 454" rowspan="6">S급</td> </tr> <tr> <td data-bbox="842 454 1134 510">(2-3인 70점)</td> </tr> <tr> <td data-bbox="842 510 1134 566">(4인 이상 60점)</td> </tr> <tr> <td data-bbox="483 521 842 645" rowspan="3">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 초판 전문서적(전공)</td> <td data-bbox="842 521 1134 577">(1인 단독 70점)</td> <td data-bbox="1134 521 1198 577" rowspan="3">70점</td> <td data-bbox="1198 521 1262 577" rowspan="3">최대 80점</td> <td data-bbox="1326 521 1390 577" rowspan="3">A급</td> </tr> <tr> <td data-bbox="842 577 1134 633">(2-3인 60점)</td> </tr> <tr> <td data-bbox="842 633 1134 689">(4인 이상 50점)</td> </tr> <tr> <td data-bbox="483 645 842 768" rowspan="3">전국규모 학술지 1)</td> <td data-bbox="842 645 1134 701">(1인 단독 30점)</td> <td data-bbox="1134 645 1198 701" rowspan="3">30점</td> <td data-bbox="1198 645 1262 701" rowspan="3"></td> <td data-bbox="1326 645 1390 701" rowspan="3">B급</td> </tr> <tr> <td data-bbox="842 701 1134 757">(2-3인 25점)</td> </tr> <tr> <td data-bbox="842 757 1134 813">(4인 이상 20점)</td> </tr> <tr> <td data-bbox="483 768 842 824">번역서, 편저서</td> <td data-bbox="842 768 1134 824">(4인 이내)</td> <td data-bbox="1134 768 1198 824">5점</td> <td data-bbox="1198 768 1262 824"></td> <td data-bbox="1326 768 1390 824"></td> </tr> <tr> <td data-bbox="483 824 842 1059" rowspan="4">연구 용역·위탁과제 수행 2)</td> <td data-bbox="842 824 1134 880">[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미만</td> <td data-bbox="1134 824 1198 880">10점</td> <td data-bbox="1198 824 1262 880"></td> <td data-bbox="1326 824 1390 880" rowspan="4">최대 40점</td> </tr> <tr> <td data-bbox="842 880 1134 936">[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td> <td data-bbox="1134 880 1198 936">20점</td> <td data-bbox="1198 880 1262 936"></td> </tr> <tr> <td data-bbox="842 936 1134 992">[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 data-bbox="1134 936 1198 992">30점</td> <td data-bbox="1198 936 1262 992"></td> </tr> <tr> <td data-bbox="842 992 1134 1059">[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억원 이상</td> <td data-bbox="1134 992 1198 1059">40점</td> <td data-bbox="1198 992 1262 1059"></td> </tr> <tr> <td data-bbox="483 1059 842 1126">사업보고서</td> <td data-bbox="842 1059 1134 1126">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3)</td> <td data-bbox="1134 1059 1198 1126">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td> <td data-bbox="1198 1059 1262 1126">60점</td> <td data-bbox="1262 1059 1326 1126">최대 60점</td> <td data-bbox="1326 1059 1390 1126"></td> </tr> <tr> <td data-bbox="483 1126 842 1238" rowspan="2">정책연구 및참여 (60점)</td> <td data-bbox="842 1126 1134 1193">정책과제수행연구 (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4)</td> <td data-bbox="1134 1126 1198 1193">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td> <td data-bbox="1198 1126 1262 1193" rowspan="2">60점</td> <td data-bbox="1262 1126 1326 1193" rowspan="2">최대 60점</td> <td data-bbox="1326 1126 1390 1193" rowspan="2"></td> </tr> <tr> <td data-bbox="842 1193 1134 1238">대학중점사업 참여 5)</td> <td data-bbox="1134 1193 1198 1238">(1건당 30점)</td> </tr> <tr> <td data-bbox="483 1238 842 1344" rowspan="3">연수 후 보고서 6) (30점)</td> <td data-bbox="842 1238 1134 1272" rowspan="3">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td> <td data-bbox="1134 1238 1198 1272">(1년 이상 30점)</td> <td data-bbox="1198 1238 1262 1272" rowspan="3">30점</td> <td data-bbox="1262 1238 1326 1272" rowspan="3">최대 30점</td> <td data-bbox="1326 1238 1390 1272" rowspan="3"></td> </tr> <tr> <td data-bbox="1134 1272 1198 1305">(6개월 이상 25점)</td> </tr> <tr> <td data-bbox="1134 1305 1198 1344">(16주 이상 20점)</td> </tr> </tbody> </table>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연구 (15%) 90점	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저서, 및 연구활동 (90점)	국제학술지 1)	(1인 단독 80점)	80점		S급	(2-3인 70점)	(4인 이상 60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 초판 전문서적(전공)	(1인 단독 70점)	70점	최대 80점	A급	(2-3인 60점)	(4인 이상 50점)	전국규모 학술지 1)	(1인 단독 30점)	30점		B급	(2-3인 25점)	(4인 이상 20점)	번역서, 편저서	(4인 이내)	5점			연구 용역·위탁과제 수행 2)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미만	10점		최대 4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억원 이상	40점		사업보고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3)	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	60점	최대 60점		정책연구 및참여 (60점)	정책과제수행연구 (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4)	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	60점	최대 60점		대학중점사업 참여 5)	(1건당 30점)	연수 후 보고서 6) (30점)	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	(1년 이상 30점)	30점	최대 30점		(6개월 이상 25점)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연구 (15%) 90점	학술논문, 작품발표, 학술저서, 및 연구활동 (90점)	국제학술지 1)	(1인 단독 80점)	80점		S급																																																																	
			(2-3인 70점)																																																																				
			(4인 이상 60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박사학위논문 1) 초판 전문서적(전공)	(1인 단독 70점)				70점	최대 80점			A급																																																												
			(2-3인 60점)																																																																				
			(4인 이상 50점)																																																																				
	전국규모 학술지 1)	(1인 단독 30점)	30점		B급																																																																		
		(2-3인 25점)																																																																					
		(4인 이상 20점)																																																																					
	번역서, 편저서	(4인 이내)	5점																																																																				
	연구 용역·위탁과제 수행 2)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미만	10점		최대 4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점																																																																					
[과제별 사업비 수입/참여 교원] 1억원 이상		40점																																																																					
사업보고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3)	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	60점	최대 60점																																																																			
정책연구 및참여 (60점)	정책과제수행연구 (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 4)	책임자 및 파트팀장(1건당 30점) 참여자(1건당 10점)	60점	최대 60점																																																																			
	대학중점사업 참여 5)	(1건당 30점)																																																																					
연수 후 보고서 6) (30점)	해외연수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산업체연수 16주 이상 참여 후 보고서 작성	(1년 이상 30점)	30점	최대 30점																																																																			
		(6개월 이상 25점)																																																																					
		(16주 이상 20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된 국제학술지와 한국학술진흥재단(KCI)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전국규모학술지, 전공서적 등 실적을 인정 2) 연구 용역·위탁과제 수행 :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한 정부 및 지자체 연구 용역·위탁과제 실적만 인정, 연구 용역·위탁과제별 개별 실적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3)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 대학에서 주관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보고서 참여 실적만 인정 4) 정책과제수행연구 : 주무부서 및 총장 승인에 따라 대학정책 및 현안 과제를 진행 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5) 대학중점사업 참여 : TDC 개발 참여,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직접 참여, K-MOOC, BH교과목, 권역원격지원센터 협약개발,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및 그에 상응한 사업(원격교육 콘텐츠는 1학점(15시간) 10점, 2학점(30시간) 20점, 3학점(45시간) 30점을 부여하며 재학생에 한정된 교육콘텐츠는 인정하지 아니함) 6) 연수 후 연구보고서 : 교무처에서 주관한 해외연수 및 산업체연수 보고서 실적만 인정 <p>※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함</p>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행	4. 산학협력실적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산학협력실적 (30%) 180점	산학협력연구개발 (60점)	현장실습지도	(회당 2점)		20점			최대 60점	
			<신 설>							
			캡스톤디자인 I 17)	(건당 5점)		20점				
			캡스톤디자인 II 18)	(건당 10점)						
			융합형멘토링	(건당 5점)		10점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당 10점)		20점				
			<신 설>							
			학생취업 연계 19)	(1인당 5점)		30점				
			창업동아리	(건당 10점)						
			창업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20)	(건당 5점)		30점				
			창의융합마케팅실습	(건당 15점)						
			<신 설>							
	<신 설>									
	산학협력연구개발 (70점)	산학협력연구개발 (70점)	기술이전	기술료	(10만원당 5점)		20점		최대 70점	
				횡수	(건당 5점)		10점			
			특허출원	국내출원	(건당 5점)		20점			
				국제출원	(건당 10점)		30점			
			특허등록	국내등록	(건당 10점)		30점			
국제등록				(건당 15점)		45점				
지식재산권 취득 21)			건수	(건당 3점)		10점				
연구장비 공동 활용			건수	(건당 5점)		20점				
			수입금	(100만원당 5점)		20점				
<신 설>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건당 10점)		20점							
교원 창업	(건당 30점)		30점							
신기술·제품 인증	(건당 20점)		20점							
산학협력실적 (30%) 180점	산학협력실적 (50점)	기술·경영지도	(건당 10점)		20점		최대 50점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회사당 5점)		20점					
		산업체 직무연수 및 파견 활동 22)	(4주 이상 10점) (2주 미만 5점)		20점					
		학교(기술지주)기업 설립 운영	(건당 30점)		30점					
		산학협동 협약 23)	(회사당 5점)		20점					
산학협력실적 (30%) 180점	산학협력실적 (50점)	내부	장학금 기탁실적(10점)	(60만원 이상)		10점		최대 50점		
				(30만원 이상)		7점				
				(30만원 미만)		5점				
			발전기금 기탁실적(10점)	(60만원 이상)		10점				
				(30만원 이상)		7점				
				(30만원 미만)		5점				
		외부	장학금 유치실적(10점)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		7점				
				(100만원 미만)		5점				
			발전기금 유치실적(10점)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		7점				
				(100만원 미만)		5점				

구분	내용																																																																																																																																																												
<p>현행</p>	<p>17) 캡스톤디자인 I : 캡스톤디자인 I 정규과목 진행된 실적을 인정</p> <p>18) 캡스톤디자인 II : 캡스톤디자인 II 과목, 융합형캡스톤디자인,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실적을 인정</p> <p>19) 학생취업연계 : 1인1취업프로젝트의 취업 실적만 인정</p> <p>20) 창업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창의 3-Step 교육캠프, 창의&창업 교육캠프, 경영교육 및 컨설팅, LINC+ Market Day, 우수성과 전시회의 실적을 인정</p> <p>21)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출원(등록 제외), 실용신안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실적 인정</p> <p>22) 산업체 직무연수 및 파견 활동 : 교무처 주관 16주 미만 산업체연수 및 기타 행정부서 산업체 직무연수 실적을 인정</p> <p>23) 산학협동 협약 : 허리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학협동 협약만 실적으로 인정</p>																																																																																																																																																												
<p>개정(안)</p>	<p>4. 산학협력실적</p> <table border="1" data-bbox="264 669 1401 1951"> <thead> <tr> <th data-bbox="264 669 381 741">영역</th> <th colspan="2" data-bbox="381 669 1131 741">평가항목</th> <th data-bbox="1131 669 1203 741">기준점수</th> <th data-bbox="1203 669 1260 741">평가점수</th> <th data-bbox="1260 669 1321 741">총계</th> <th data-bbox="1321 669 1401 741">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741 381 1346" rowspan="12"> <p>산학협력실적 (30%) 180점</p> </td> <td data-bbox="381 741 485 1346" rowspan="12"> <p>산학협력 교육활동 (60점)</p> </td> <td data-bbox="485 741 724 786"> <p>현장실습 방문지도</p> </td> <td data-bbox="724 741 1131 786"> <p>(회당 2점)</p> </td> <td data-bbox="1131 741 1203 786" rowspan="2"> <p>20점</p> </td> <td data-bbox="1203 741 1260 786" rowspan="2"></td> <td data-bbox="1321 741 1401 1346" rowspan="12"> <p>최대 60점</p> </td> </tr> <tr> <td data-bbox="485 786 724 831"> <p>현장실습 심화 교육 17)</p> </td> <td data-bbox="724 786 1131 831"> <p>(건당 10점)</p> </td> </tr> <tr> <td data-bbox="485 831 724 875"> <p>캡스톤디자인 I 교육</p> </td> <td data-bbox="724 831 1131 875"> <p>(건당 5점)</p> </td> <td data-bbox="1131 831 1203 875" rowspan="2"> <p>20점</p> </td> <td data-bbox="1203 831 1260 875" rowspan="2"></td> <td data-bbox="1321 831 1401 875" rowspan="2"></td> </tr> <tr> <td data-bbox="485 875 724 920"> <p>캡스톤디자인 II 교육</p> </td> <td data-bbox="724 875 1131 920"> <p>(건당 10점)</p> </td> </tr> <tr> <td data-bbox="485 920 724 965"> <p><삭제></p> </td> <td data-bbox="724 920 1131 965"></td> <td data-bbox="1131 920 1203 965"></td> <td data-bbox="1203 920 1260 965"></td> <td data-bbox="1260 920 1321 965"></td> <td data-bbox="1321 920 1401 965"></td> </tr> <tr> <td data-bbox="485 965 724 1010"> <p><삭제></p> </td> <td data-bbox="724 965 1131 1010"></td> <td data-bbox="1131 965 1203 1010"></td> <td data-bbox="1203 965 1260 1010"></td> <td data-bbox="1260 965 1321 1010"></td> <td data-bbox="1321 965 1401 1010"></td> </tr> <tr> <td data-bbox="485 1010 724 1055"> <p>공유협업 및 융합교육 18)</p> </td> <td data-bbox="724 1010 1131 1055"> <p>(건당 15점)</p> </td> <td data-bbox="1131 1010 1203 1055"> <p>15점</p> </td> <td data-bbox="1203 1010 1260 1055"></td> <td data-bbox="1260 1010 1321 1055"></td> <td data-bbox="1321 1010 1401 1055"></td> </tr> <tr> <td data-bbox="485 1055 724 1099"> <p>학생취업 연계 19)</p> </td> <td data-bbox="724 1055 1131 1099"> <p>(1인당 5점)</p> </td> <td data-bbox="1131 1055 1203 1099"> <p>30점</p> </td> <td data-bbox="1203 1055 1260 1099"></td> <td data-bbox="1260 1055 1321 1099"></td> <td data-bbox="1321 1055 1401 1099"></td> </tr> <tr> <td data-bbox="485 1099 724 1144"> <p>창업동아리</p> </td> <td data-bbox="724 1099 1131 1144">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131 1099 1203 1144"> <p>10점</p> </td> <td data-bbox="1203 1099 1260 1144"></td> <td data-bbox="1260 1099 1321 1144"></td> <td data-bbox="1321 1099 1401 1144"></td> </tr> <tr> <td data-bbox="485 1144 724 1189"> <p><삭제></p> </td> <td data-bbox="724 1144 1131 1189"></td> <td data-bbox="1131 1144 1203 1189"></td> <td data-bbox="1203 1144 1260 1189"></td> <td data-bbox="1260 1144 1321 1189"></td> <td data-bbox="1321 1144 1401 1189"></td> </tr> <tr> <td data-bbox="485 1189 724 1234"> <p><삭제></p> </td> <td data-bbox="724 1189 1131 1234"></td> <td data-bbox="1131 1189 1203 1234"></td> <td data-bbox="1203 1189 1260 1234"></td> <td data-bbox="1260 1189 1321 1234"></td> <td data-bbox="1321 1189 1401 1234"></td> </tr> <tr> <td data-bbox="485 1234 724 1279"> <p>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 20)</p> </td> <td data-bbox="724 1234 1131 1279">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131 1234 1203 1279"> <p>10점</p> </td> <td data-bbox="1203 1234 1260 1279"></td> <td data-bbox="1260 1234 1321 1279"></td> <td data-bbox="1321 1234 1401 1279"></td> </tr> <tr> <td data-bbox="485 1279 724 1323"> <p>산업체 재직자 교육</p> </td> <td data-bbox="724 1279 1131 1323">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131 1279 1203 1323"> <p>10점</p> </td> <td data-bbox="1203 1279 1260 1323"></td> <td data-bbox="1260 1279 1321 1323"></td> <td data-bbox="1321 1279 1401 1323"></td> </tr> <tr> <td data-bbox="264 1346 381 1951" rowspan="12"> <p>산학협력실적 (30%) 180점</p> </td> <td data-bbox="381 1346 485 1951" rowspan="12"> <p>산학협력 연구활동 (70점)</p> </td> <td data-bbox="485 1346 724 1391" rowspan="2"> <p>기술이전</p> </td> <td data-bbox="724 1346 1131 1391"> <p>기술료</p> </td> <td data-bbox="1131 1346 1203 1391"> <p>(10만원당 5점)</p> </td> <td data-bbox="1203 1346 1260 1391"> <p>20점</p> </td> <td data-bbox="1321 1346 1401 1391" rowspan="12"> <p>최대 70점</p> </td> </tr> <tr> <td data-bbox="724 1391 1131 1435"> <p>회수</p> </td> <td data-bbox="1131 1391 1203 1435"> <p>(건당 5점)</p> </td> <td data-bbox="1203 1391 1260 1435"> <p>10점</p> </td> <td data-bbox="1260 1391 1321 1435"></td> </tr> <tr> <td data-bbox="485 1435 724 1480" rowspan="2"> <p>특허출원</p> </td> <td data-bbox="724 1435 1131 1480"> <p>국내출원</p> </td> <td data-bbox="1131 1435 1203 1480"> <p>(건당 5점)</p> </td> <td data-bbox="1203 1435 1260 1480"> <p>20점</p> </td> <td data-bbox="1260 1435 1321 1480"></td> <td data-bbox="1321 1435 1401 1480"></td> </tr> <tr> <td data-bbox="724 1480 1131 1525"> <p>국제출원</p> </td> <td data-bbox="1131 1480 1203 1525">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203 1480 1260 1525"> <p>30점</p> </td> <td data-bbox="1260 1480 1321 1525"></td> <td data-bbox="1321 1480 1401 1525"></td> </tr> <tr> <td data-bbox="485 1525 724 1570" rowspan="2"> <p>특허등록</p> </td> <td data-bbox="724 1525 1131 1570"> <p>국내등록</p> </td> <td data-bbox="1131 1525 1203 1570">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203 1525 1260 1570"> <p>30점</p> </td> <td data-bbox="1260 1525 1321 1570"></td> <td data-bbox="1321 1525 1401 1570"></td> </tr> <tr> <td data-bbox="724 1570 1131 1615"> <p>국제등록</p> </td> <td data-bbox="1131 1570 1203 1615"> <p>(건당 15점)</p> </td> <td data-bbox="1203 1570 1260 1615"> <p>45점</p> </td> <td data-bbox="1260 1570 1321 1615"></td> <td data-bbox="1321 1570 1401 1615"></td> </tr> <tr> <td data-bbox="485 1615 724 1659"> <p>지식재산권 취득 21)</p> </td> <td data-bbox="724 1615 1131 1659"> <p>건수</p> </td> <td data-bbox="1131 1615 1203 1659"> <p>(건당 3점)</p> </td> <td data-bbox="1203 1615 1260 1659"> <p>10점</p> </td> <td data-bbox="1260 1615 1321 1659"></td> <td data-bbox="1321 1615 1401 1659"></td> </tr> <tr> <td data-bbox="485 1659 724 1704" rowspan="2"> <p>연구장비 공동 활용</p> </td> <td data-bbox="724 1659 1131 1704"> <p>건수</p> </td> <td data-bbox="1131 1659 1203 1704"> <p>(건당 5점)</p> </td> <td data-bbox="1203 1659 1260 1704"> <p>20점</p> </td> <td data-bbox="1260 1659 1321 1704"></td> <td data-bbox="1321 1659 1401 1704"></td> </tr> <tr> <td data-bbox="724 1704 1131 1749"> <p>수입금</p> </td> <td data-bbox="1131 1704 1203 1749"> <p>(100만원당 5점)</p> </td> <td data-bbox="1203 1704 1260 1749"> <p>20점</p> </td> <td data-bbox="1260 1704 1321 1749"></td> <td data-bbox="1321 1704 1401 1749"></td> </tr> <tr> <td data-bbox="485 1749 724 1794"> <p>산학공동 R&BD</p> </td> <td data-bbox="724 1749 1131 1794"></td> <td data-bbox="1131 1749 1203 1794">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203 1749 1260 1794"> <p>30점</p> </td> <td data-bbox="1260 1749 1321 1794"></td> <td data-bbox="1321 1749 1401 1794"></td> </tr> <tr> <td data-bbox="485 1794 724 1839"> <p>기업부설연구소 유치</p> </td> <td data-bbox="724 1794 1131 1839"></td> <td data-bbox="1131 1794 1203 1839"> <p>(건당 10점)</p> </td> <td data-bbox="1203 1794 1260 1839"> <p>20점</p> </td> <td data-bbox="1260 1794 1321 1839"></td> <td data-bbox="1321 1794 1401 1839"></td> </tr> <tr> <td data-bbox="485 1839 724 1883"> <p>교원 창업</p> </td> <td data-bbox="724 1839 1131 1883"></td> <td data-bbox="1131 1839 1203 1883"> <p>(건당 30점)</p> </td> <td data-bbox="1203 1839 1260 1883"> <p>30점</p> </td> <td data-bbox="1260 1839 1321 1883"></td> <td data-bbox="1321 1839 1401 1883"></td> </tr> <tr> <td data-bbox="485 1883 724 1928"> <p>신기술·제품 인증</p> </td> <td data-bbox="724 1883 1131 1928"></td> <td data-bbox="1131 1883 1203 1928"> <p>(건당 20점)</p> </td> <td data-bbox="1203 1883 1260 1928"> <p>20점</p> </td> <td data-bbox="1260 1883 1321 1928"></td> <td data-bbox="1321 1883 1401 1928"></td> </tr> </tbody> </table>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p>산학협력실적 (30%) 180점</p>	<p>산학협력 교육활동 (60점)</p>	<p>현장실습 방문지도</p>	<p>(회당 2점)</p>	<p>20점</p>		<p>최대 60점</p>	<p>현장실습 심화 교육 17)</p>	<p>(건당 10점)</p>	<p>캡스톤디자인 I 교육</p>	<p>(건당 5점)</p>	<p>20점</p>			<p>캡스톤디자인 II 교육</p>	<p>(건당 10점)</p>	<p><삭제></p>						<p><삭제></p>						<p>공유협업 및 융합교육 18)</p>	<p>(건당 15점)</p>	<p>15점</p>				<p>학생취업 연계 19)</p>	<p>(1인당 5점)</p>	<p>30점</p>				<p>창업동아리</p>	<p>(건당 10점)</p>	<p>10점</p>				<p><삭제></p>						<p><삭제></p>						<p>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 20)</p>	<p>(건당 10점)</p>	<p>10점</p>				<p>산업체 재직자 교육</p>	<p>(건당 10점)</p>	<p>10점</p>				<p>산학협력실적 (30%) 180점</p>	<p>산학협력 연구활동 (70점)</p>	<p>기술이전</p>	<p>기술료</p>	<p>(10만원당 5점)</p>	<p>20점</p>	<p>최대 70점</p>	<p>회수</p>	<p>(건당 5점)</p>	<p>10점</p>		<p>특허출원</p>	<p>국내출원</p>	<p>(건당 5점)</p>	<p>20점</p>			<p>국제출원</p>	<p>(건당 10점)</p>	<p>30점</p>			<p>특허등록</p>	<p>국내등록</p>	<p>(건당 10점)</p>	<p>30점</p>			<p>국제등록</p>	<p>(건당 15점)</p>	<p>45점</p>			<p>지식재산권 취득 21)</p>	<p>건수</p>	<p>(건당 3점)</p>	<p>10점</p>			<p>연구장비 공동 활용</p>	<p>건수</p>	<p>(건당 5점)</p>	<p>20점</p>			<p>수입금</p>	<p>(100만원당 5점)</p>	<p>20점</p>			<p>산학공동 R&BD</p>		<p>(건당 10점)</p>	<p>30점</p>			<p>기업부설연구소 유치</p>		<p>(건당 10점)</p>	<p>20점</p>			<p>교원 창업</p>		<p>(건당 30점)</p>	<p>30점</p>			<p>신기술·제품 인증</p>		<p>(건당 20점)</p>	<p>20점</p>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p>산학협력실적 (30%) 180점</p>	<p>산학협력 교육활동 (60점)</p>	<p>현장실습 방문지도</p>	<p>(회당 2점)</p>	<p>20점</p>		<p>최대 60점</p>																																																																																																																																																							
		<p>현장실습 심화 교육 17)</p>	<p>(건당 10점)</p>																																																																																																																																																										
		<p>캡스톤디자인 I 교육</p>	<p>(건당 5점)</p>	<p>20점</p>																																																																																																																																																									
		<p>캡스톤디자인 II 교육</p>	<p>(건당 10점)</p>																																																																																																																																																										
		<p><삭제></p>																																																																																																																																																											
		<p><삭제></p>																																																																																																																																																											
		<p>공유협업 및 융합교육 18)</p>	<p>(건당 15점)</p>	<p>15점</p>																																																																																																																																																									
		<p>학생취업 연계 19)</p>	<p>(1인당 5점)</p>	<p>30점</p>																																																																																																																																																									
		<p>창업동아리</p>	<p>(건당 10점)</p>	<p>10점</p>																																																																																																																																																									
		<p><삭제></p>																																																																																																																																																											
		<p><삭제></p>																																																																																																																																																											
		<p>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 20)</p>	<p>(건당 10점)</p>	<p>10점</p>																																																																																																																																																									
<p>산업체 재직자 교육</p>	<p>(건당 10점)</p>	<p>10점</p>																																																																																																																																																											
<p>산학협력실적 (30%) 180점</p>	<p>산학협력 연구활동 (70점)</p>	<p>기술이전</p>	<p>기술료</p>	<p>(10만원당 5점)</p>	<p>20점</p>	<p>최대 70점</p>																																																																																																																																																							
			<p>회수</p>	<p>(건당 5점)</p>	<p>10점</p>																																																																																																																																																								
		<p>특허출원</p>	<p>국내출원</p>	<p>(건당 5점)</p>	<p>20점</p>																																																																																																																																																								
			<p>국제출원</p>	<p>(건당 10점)</p>	<p>30점</p>																																																																																																																																																								
		<p>특허등록</p>	<p>국내등록</p>	<p>(건당 10점)</p>	<p>30점</p>																																																																																																																																																								
			<p>국제등록</p>	<p>(건당 15점)</p>	<p>45점</p>																																																																																																																																																								
		<p>지식재산권 취득 21)</p>	<p>건수</p>	<p>(건당 3점)</p>	<p>10점</p>																																																																																																																																																								
		<p>연구장비 공동 활용</p>	<p>건수</p>	<p>(건당 5점)</p>	<p>20점</p>																																																																																																																																																								
			<p>수입금</p>	<p>(100만원당 5점)</p>	<p>20점</p>																																																																																																																																																								
		<p>산학공동 R&BD</p>		<p>(건당 10점)</p>	<p>30점</p>																																																																																																																																																								
		<p>기업부설연구소 유치</p>		<p>(건당 10점)</p>	<p>20점</p>																																																																																																																																																								
		<p>교원 창업</p>		<p>(건당 30점)</p>	<p>30점</p>																																																																																																																																																								
<p>신기술·제품 인증</p>		<p>(건당 20점)</p>	<p>20점</p>																																																																																																																																																										

구분	내용							
영역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총계	비고
	산학협력 실적 (30%) 180점	산학협력력 동시활동 (50점)	기술·경영지도	가족회사 연계 기술지도	(기술지도 7회당)	14점		최대 50점
그 외				(기술지도 회당 5점)	10점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유료가족회사	(산업체당 10점)	30점			
			그 외	(산업체당 5점)	10점			
산업체 직무연수 및 파견 활동 22)			(4주 이상 10점) (2주 미만 5점)	20점				
학교(기술지주)기업 설립 운영			(건당 30점)	30점				
산학협동 협약 23)		(회사당 5점)	20점					
내부		장학금 기탁실적(10점)	(60만원 이상)	10점				
			(30만원 이상)	7점				
			(30만원 미만)	5점				
		발전기금 기탁실적(10점)	(60만원 이상)	10점				
			(30만원 이상)	7점				
			(30만원 미만)	5점				
외부		장학금 유치실적(10점)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		7점					
	(100만원 미만)		5점					
	발전기금 유치실적(10점)	(300만원 이상)	10점					
		(100만원 이상)	7점					
		(100만원 미만)	5점					

17) 현장실습 심화 교육 : 현장밀착형 워크스터디 지도교수
18) 공유협업 및 융합교육 : 공유협업 교육(리빙랩, 타대학 등 공유협업 프로젝트 수행) 및 융합교육(융합형 캡스톤, 융합형 현장실습, 융합형 멘토링) 운영 실적을 인정
19) 학생취업연계 : 1인1취업프로젝트의 취업 실적만 인정
20) 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 참여 : 허리인재 및 주문식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참여 실적 등
21)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출원(등록 제외), 실용신안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실적 인정
22) 산업체 직무연수 및 파견 활동 : 교무처 주관 16주 미만 산업체연수 및 기타 행정부서 산업체 직무연수 실적을 인정
23) 산학협동 협약 : 사회수요맞춤형교육(허리인재, 주문식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협약만 실적으로 인정

9. 정보보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조(적용 대상과 범위)에 제4항 “④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한다.”를 신설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에 제14조 “⑭ “정보보안담당자”란 정보보안을 담당하며, 내부 및 외부 감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수행 조직의 기밀성,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며,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 제8조(정보보안 기본활동) 제7호에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을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8호에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보안관제”를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로 변경한다.
- 같은조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1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총괄 16. 시스템실, 정보통신망 현황 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17.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 발시설 보호 1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19.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20. 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을 신설한다.
- 같은조 “제15호”를 “제21호”로 호 변경한다.
- 제10조 “제10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실 2. 보안 관제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 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식별·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 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영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③ 정보자원을 통합·운영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10조(보안 점검), 제11조(보안사고의 처리), 제12조(보안 교육)”을 “제11조(보안 점검), 제12조(보안사고의 처리, 제13조(보안 교육)”으로 조 변경한다.
- 제14조 “제14조(위규자 처리) 총장은 우리대학 정보보안관리규정 위규자에 대해 “원광보건대학교 정보보안관리규정 위규자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제13조(사용자 정의), 제14조(적절성 확보), 제15조(사용자 제재)”를 “제15조(사용자 정의), 제16조(적절성 확보), 제17조(사용자 제재)”로 조 변경한다.
- 제18조 “제18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도구 등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 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19조 “제19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 업체에게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을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3조(용역업체 보안)을 준용한다.”를 신설한다.
- 제5장 “제5장 정보화사업 보안”을 신설한다.
- 제20조 “제20조(정보시스템 도입) 신규 보안 장비 도입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 한계에 대한 분석 2. 추가 자원의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예상 3. CC 인증 등 성능,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법규 등을 포함한 시스템 자원의 기능적, 운영적 요구 사항 4. 보안 통제 구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 지원 여부(사용자, 인증, 사용자 권한관리, 비밀번호 변경, 감사기록 보관, 모니터링 기능 등) 5.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영성, 기술표준에 따른 확장성 6. 보안 기능의 부재 또는 실패 시 잠재적인 업무 손상 정도 7. 자체 보안성 검토를 수행[서식 제1호, 서식 제2호]”를 신설한다.
- 제21조 “제21조(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①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②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2. 외부인력의 보안 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3.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4.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5.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③ 교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웹사이트를 구축 및 개발하고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개발 시 설계·구축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웹서버 구축 2.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하고 공신력 있는 보안 취약점 점검툴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운영단계에서도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호 활동 수행 4.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안 관련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안전한 웹사이트를 구축 및 개발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22조 “제22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 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신설한다.
- 제23조 “제23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및 재발 방지대책,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교육부장관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자가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4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24조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24조의2 “제24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보안담당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25조 “제25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보안담당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제25조의2 “제25조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영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를 신설한다.
- “제16조(전산망 관리), 제17조(네트워크의 보호)”를 “제26조(전산망 관리), 제27조(네트워크의 보호)”로 조 변경한다.
- “제6장 서버 관리”를 “제7장 서버 관리”로 장 변경한다.
- “제18조(운영 및 관리), 제19조(보안관리), 제20조(계정관리)”를 “제28조(운영 및 관리), 제29조(보안관리), 제30조(계정관리)”로 조 변경한다.
- “제7장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제8장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장 변경한다.
- “제21조(자료의 관리), 제22조(자료의 보관), 제23조(자료의 파기)”를 “제31조(자료의 관리), 제32조(자료의 보관), 제33조(자료의 파기)”로 조 변경한다.
- “제8장 응용프로그램 관리”를 “제9장 응용프로그램 관리”로 장 변경한다.
- “제24조(응용프로그램 개발), 제25조(응용프로그램 운용)”을 “제34조(응용프로그램 개발), 제35조(응용프로그램 운용)”로 조 변경한다.
- “제9장 PC관리”를 “제10장 PC관리”로 장 변경한다.
- “제26조(PC의 관리)”를 삭제한다.
- 제36조 “제3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노트북·휴대폰·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PC 등(CMOS 비밀번호), 자료(중요문서로 암호화 및 비밀번호 설정), 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한다.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공유·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 사용자는 PC 등 단말기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데이터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27조(바이러스 예방 및 조치)”를 “제37조(바이러스 예방 및 조치)”로 조 변경한다.
 - “제10장 시스템실 운영·관리”를 “제11장 시스템실 운영·관리”로 장 변경한다.
 - “제28조(시스템실 시설기준), 제29조(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를 “제38조(시스템실 시설기준), 제39조(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로 조 변경한다.
 - “제11장 기타”를 “제12장 기타”로 장 변경한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1조(준용)”을 “제40조(시행규칙), 제41조(준용)”로 조 변경한다.
 - “[별표1]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을 신설한다.
 - “[서식 제1호]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신설한다.
 - “[서식 제2호] 보안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신설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대상과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교내 전산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및 그 이용자로 한다.</p> <p>② 우리대학의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운영환경 및 응용프로그램의 운영과 제공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p>③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는 우리대학의 전산자원을 사용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있으며 정보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p> <p><신 설></p>	<p>제2조(적용 대상과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red;">④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전산망”이라 함은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처리·보관하거나 송수신하는 조직망을 말한다.</p> <p>②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p> <p>③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전자적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④ “데이터베이스관리자”라 함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정보자료를 말하며, 백업미디어 등 저장매체를 포함한다.</p> <p>⑥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p> <p>⑦ “시스템실”이라 함은 서버·PC 등 전산장비와 스위치·라우터 등 통신 및 송수신 장비 등이 설치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p> <p>⑧ “정보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우리대학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적 민원처리 또는 업무 담당자, 웹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시스템 관리자를 말한다.</p> <p>⑨ “업무담당자”란 전자적 민원처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⑩ “민원인”이란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주체로서,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 단체 및 그 기관의 담당자 등을 말한다.</p> <p>⑪ “본인확인”이란 전산망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민원인 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⑫ “접근권한”이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p> <p>⑬ “행정정보”란 우리대학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p> <p><신설></p>	<p>⑤ ~ ⑬ (현행과 같음)</p> <p><u>⑭ “정보보안담당자”란 정보보안을 담당하며, 내부 및 외부 감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수행 조직의 기밀성,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며,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8조(정보보안 기본활동)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4. 정보보안 업무 지도·감독 5.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6.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7. <u>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u> 	<p>제8조(정보보안 기본활동)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u>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u>

현행	개정(안)
<p>8. <u>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보안관제</u></p> <p>9.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p> <p>10. 정보보안 사고조사 결과 처리</p> <p>11.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p> <p>12. 주요 전산망 기반시설 보호활동</p> <p>13. 보안시스템 및 암호키의 운용·보안관리</p> <p>14. 전산망 보안대책의 수립·시행</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15.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p>	<p>8. <u>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u></p> <p>9. ~ 14. (현행과 같음)</p> <p>15. <u>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총괄</u></p> <p>16. <u>시스템실, 정보통신망 현황 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u></p> <p>17. <u>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u></p> <p>18. <u>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u></p> <p>19. <u>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감사</u></p> <p>20. <u>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u></p> <p>21.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p>
<p><신 설></p>	<p><u>제10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u></p> <p><u>1. 시스템실</u></p> <p><u>2. 보안관제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u></p> <p><u>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u></p> <p><u>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u>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u></p> <p><u>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u></p> <p><u>3. 출입자 식별·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u></p> <p><u>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u></p> <p><u>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u></p> <p><u>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영</u></p> <p><u>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u></p> <p><u>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u></p> <p><u>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u></p>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정보자원을 통합·운영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 점검)	제11조(보안 점검)
제11조(보안사고의 처리)	제12조(보안사고의 처리)
제12조(보안 교육)	제13조(보안 교육)
<신설>	제14조(위규자 처리) 총장은 우리대학 정보보안관리규정 위규자에 대해 “원광보건대학교 정보보안관리규정 위규자 처리 기준” ([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정의)	제15조(사용자 정의)
제14조(적절성 확보)	제16조(적절성 확보)
제15조(사용자 제재)	제17조(사용자 제재)
<신설>	<p>제18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p>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도구 등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 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p> <p>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p>

편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9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게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u> <u>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u> <u>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u> <u>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u> <u>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u> <u>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u> <p><u>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을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u></p> <p><u>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3조(용역업체 보안)을 준용한다.</u></p>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u>제 5 장 정보화사업 보안</u></p> <p><u>제20조(정보시스템 도입) 신규 보안 장비 도입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 한계에 대한 분석</u> <u>2. 추가 자원의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예상</u> <u>3. CC인증 등 성능,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법규 등을 포함한 시스템 자원의 기능적, 운영적 요구 사항</u> <u>4. 보안 통제 구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 지원 여부(사용자, 인증, 사용자 권한관리, 패스워드 변경, 감사기록 보관, 모니터링 기능 등)</u>

편 행	개 정 (안)
<신 설>	<p>5.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영성, 기술표준에 따른 확장성</p> <p>6. 보안 기능의 부재 또는 실패 시 잠재적인 업무 손상 정도</p> <p>7. 자체 보안성 검토를 수행[서식 제1호, 서식 제2호]</p>
<신 설>	<p>제21조(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①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p>②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2.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3.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4.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5.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p>③ 교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웹사이트를 구축 및 개발하고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홈페이지 개발 시 설계·구축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웹서버 구축 2.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하고 공신력 있는 보안 취약점 점검툴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운영단계에서도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호 활동 수행 4.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안 관련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안전한 웹사이트를 구축 및 개발

변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p>제22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신 설>	<p>제23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편 행	개 정 (안)
<신 설>	<p>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정보 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및 재발 방지대책,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p> <p>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p> <p>5.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 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p> <p>6.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p> <p>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p> <p>8. 사업 종료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p> <p>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또는 교육부장관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p> <p>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p> <p>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p> <p>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자가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p> <p>2. 제24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p> <p>3.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p> <p>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p> <p>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 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5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19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변 행	개 정 (안)
<신 설>	⑥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보안담당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2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보안담당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p><u>제25조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u>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영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16조(전산망 관리)	<u>제26조(전산망 관리)</u>
제17조(네트워크의 보호)	<u>제27조(네트워크의 보호)</u>
제 6 장 서버 관리	<u>제 7 장</u> 서버 관리
제18조(운영 및 관리)	<u>제28조(운영 및 관리)</u>
제19조(보안관리)	<u>제29조(보안관리)</u>
제20조(계정관리)	<u>제30조(계정관리)</u>
제 7 장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u>제 8 장</u>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제21조(자료의 관리)	<u>제31조(자료의 관리)</u>
제22조(자료의 보관)	<u>제32조(자료의 보관)</u>
제23조(자료의 파기)	<u>제33조(자료의 파기)</u>
제 8 장 응용프로그램 관리	<u>제 9 장</u> 응용프로그램 관리
제24조(응용프로그램 개발)	<u>제34조(응용프로그램 개발)</u>
제25조(응용프로그램 운용)	<u>제35조(응용프로그램 운용)</u>
제 9 장 PC 관리	<u>제 10 장</u> PC 관리

현행	개정(안)
<p>제26조(PC의 관리) ① PC 사용 시 CMOS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한다.</p> <p>② PC에는 화면 보호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패스워드를 설정한다.</p> <p>③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끈다.</p> <p>④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복사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외부기억장치를 사용할 때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p> <p>⑥ 중요한 정보는 PC내에 보관하지 아니 하며, 별도의 외부 기억장치에 담아 물리적인 보안이 철저한 위치에 보관한다.</p>	<p>제26조(PC의 관리) ① ~ ⑥ <삭 제></p>
<p><신 설></p>	<p>제3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노트북·휴대폰·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p> <p>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 등(CMOS 비밀번호), 자료(중요문서로 암호화 및 비밀번호 설정), 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한다.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공유·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p>③ 사용자는 PC 등 단말기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데이터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바이러스 예방 및 조치)	<u>제37조</u> (바이러스 예방 및 조치)
제 10 장 시스템실 운영 · 관리	<u>제 11 장</u> 시스템실 운영 · 관리
제28조(시스템실 시설기준)	<u>제38조</u> (시스템실 시설기준)
제29조(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	<u>제39조</u> (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
제 11 장 기 타	<u>제 12 장</u> 기 타
제30조(시행규칙)	<u>제40조</u> (시행규칙)
제31조(준용)	<u>제41조</u> (준용)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법률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전자정보(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관리 위반 가.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나. 전자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2. 정보시스템 관리 위반 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의 유포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다.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3. 중요 자료관리 위반 가. 비밀이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 나.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4. 기타 가. 관련 법률에 의거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보안 사고 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위반한 때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시정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시정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 용역업체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사항	
2	○ 계약서에 참가 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위약금 부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등) 등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3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4	○ 정보통신망도.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5	○ 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6	○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7	○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8	○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강구	
추가 보안 사항		

※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은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용역 사업에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여부	
2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대책	
4	○ 서버관리자는 개발 완료 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	
5	○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6	○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7	○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8	○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에 대한 보안 대책	
9	○ 업무망과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전송은 「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 적용	
10	○ 이벤트 로그는 1년 이상 저장	
11	○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홈페이지 구축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설정 사전 확인	
2	○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 가이드'를 참고, 취약점 제거	
3	○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 적용	
4	○ 관리자 접근 웹페이지 로그인에 전자서명인증서 등 적용을 통해 보안 강화	
5	○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 설정·관리	
6	○ DBMS에 개인정보 암호화(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적용	
7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처 방지 등) 마련	
8	○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치, 위.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시스템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 강구	
9	○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	
10	○ 외부에 공개될 목적으로 설치된 웹서버가 DMZ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	
11	○ 민원서류발급시스템(이수증 등)의 경우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 등 보안대책 강구	
12	○ 웹 로그는 1년 이상 저장	
1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반영 여부	
14	○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네트워크/보안/서버등 정보보안 인프라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2	○ 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운영	
3	○ 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4	○ 사용자의 직접적인 데이터베이스 접속 차단,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조치 실시	
5	○ 도입 시스템 환경 설정 시 보안취약점 사전제거 - 제조사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는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반영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관련 구성 설정 확인 등	
6	○ 서버 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운영	
7	○ 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설주소체계(NAT) 적용	
8	○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치,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적용	
9	○ 장비 신규 도입·구축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발생 등의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한 보안대책이 수립되었는가?	
10	○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보안성 검토 결과 보고서

검토대상	사업명			
	수서명		부서담당자	
	관련근거	문서번호		
		문서제목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용역관리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개발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구축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보안/서버등 정보보안 인프라 보안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안성 검토	검토일자		검토담당	
【검토 의견】				

10.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내용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정 2022. 00.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치하고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5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6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총원할 수 있다.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 2. 근로자의 고충처리
- 3.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4.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5.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6. 근로자의 복지 증진
- 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4. 경제적 재정적 상황

제27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계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대표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1.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 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단내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4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7 장 보칙

제35조(대표위원의 권한 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7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8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